예 산 총 칙

2009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78,671,147	11,360,134
일반회계	339,136,112	10,174,083
특별회계	39,535,035	1,186,051
기타특별회계	39,535,035	1,186,05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440,854	163,226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	706,855	21,206
저소득주민생활특별회계	297,801	8,934
주민소득지원자금특별회계	611,409	18,342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6,077,071	182,312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18,822,200	564,666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2,481,858	74,456
농업재해복구자금특별회계	1,021,101	30,633
수질개선기금사업특별회계	3,949,064	118,472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126,822	3,805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295,801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2009년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3,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